

서울특별시의회
제327회 제2차 정례회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발의자 : 신동원 의원(노원1, 국민의힘)

의안번호 : 2241

서울특별시의회
보건복지위원회

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.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

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.

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동 개정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

고독사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바

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

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

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

정기적 안부확인, 심리상담·치료 등의 사업 및

필요 물품·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

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 「고독사예방법」과의 통일성을 위해 ‘고독사 정의’를 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3조제2항 고독사 관련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

자 기존 고독사 현황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‘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,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으로 책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.

- 안 제7조제3항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개입거부 가구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품,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동 개정안을 통해

고독사 및 ‘사회적 고립의 예방’을 위한

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함께

사회적 고립가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

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 및 고립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복원으로

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위원님 여러분

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가결을 통해

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

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

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